

파주시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정이유

- 지역경제 규모의 성장과 사업경비 규모의 확대등 재정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, 투·융자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가.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사업으로 선정함(안제2조제1항)
- 나.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제4조)
- 다. 투자심사 결과를 적정, 조건부추진, 재검토, 부적정으로 분류하여 사업의 예산반영 여부를 심사함(안제6조제2항)
- 라. 투자사업후 총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증가되었거나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를 재 실시함(안제7조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·군 및 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 투·융자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을 9인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제정에 따른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제정조례안은 파주시투자사업심사규정('96. 3. 1)으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왔으나
- 지역경제 규모의 성장과 사업경비 규모의 확대등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